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73
----------	-----

2023년 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구미경 의원(찬성의원 32명)
- 나. 발 의 일: 2023년 2월 6일
- 다. 회 부 일: 2023년 2월 9일
- 라. 상 정 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2월 1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구미경 의원)

###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같이 선임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정수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20명”에서 “15명이상 20명 이내”로 함(안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2023. 2. 14. ~ 2. 18.)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개정조례안은 직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선임하는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 수를 현행 20명의 정수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 〈 본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b>20명으로</b>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b>15명 이상 20명 이내로</b>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본 조례 제3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지방자치법」 제73조)

- 한편, 지난 305회 임시회(2022.2.21)에서는 본 조례의 검사위원 수를 종전 10명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정한 검사위원 수 범위의 최대치인 현행 20명 정수\*\*로 확대하여 개정하였는바,
  - 검사위원의 확대 운영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결산검사 위원 수: '21년 10명 → '22년 20명(증 10명)

※ 결산검사 관련 수당 등 소요액: '21년 196백만원 → '22년 266백만원(증 70백만원)

※ 결산검사 의견 수: '21년 77건 → '22년 97건(증 20건)

※ 본 조례에서는 결산위원 구성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검사위원수를 선임범위가 아닌 정수로 규정(2015. 4.2. 일부개정부터 현행까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 >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

종 전	현 행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 조례의 결산 검사위원 위원 수 규정 경과 >

제·개정일	검사위원 수	본 조례 조문(제2조)	시행령 상 검사위원 수	비고
1992.5. (제정)	5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5인 이내	범위
1994.7.	5인 이상 10인 이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5인 이상 10인 이하	범위
2015.4.	10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인 이상 10인 이하	정수
2022.3. (현행)	20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2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7명 이상 20명 이내 (’22.1.13. 시행)	정수
2023.2. (본 개정안)	15명 이상 20명 이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7명 이상 20명 이내	범위

-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정수(20명) 규정으로는 검사위원 사퇴 등 우발적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바, 검사위원 수를 범위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검사위원 선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 ※ 2022년 결산검사 중 위원 1명 사퇴(’22.4.12.), 의장 직권 선임(4.13.), 의결(4.26.)
  -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⑤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규모를 감안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하여 지방의회에 선임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선임 의뢰	<p>「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023.1.1. 시행) (40쪽)</p> <p>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처리일정의 협의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감안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하여 선임을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관련 전문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p>
	<p>※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검사위원 수를 범위로 정하면서, ‘그 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검사위원 수를 정하여 지방의회에 선임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침해 여지가 있는 바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p>

- 검사위원 선임 수를 현행 정수(20명)에서 범위(15~20명)로 개정함으로써 결산검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집행기관과의 역할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재무국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시·도의 경우 검사위원 수를 7명 이상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가장 많은 9개 시·도는 이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개 시·도는 상한 수를 축소 규정하였고, 나머지 4개 시·도는 정수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 실제 검사위원 수를 정한 15개 시·도 검사위원 수는 평균 10.7명 수준으로 나타나는바,

< 전국 17개 시·도별 검사위원 선임 수(범위) 현황 >

20명	7명~20명	7~15명	7~10명	10명	9명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세종	부산	충북, 경남	인천, 울산, 경기	강원

※ 특정 정수로 규정한 시·도 현황: 4개 시·도(경기, 인천, 울산, 강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규모 등의 비교를 통한 적정 감사위원 수 선임 범위 등에 대하여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전국 17개 시·도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 현황 >

지자체명	감사 위원수	실제 운영위원수		예산규모(2023)	검사기간	수당	조례 소관
		'22년	'23년				
서울특별시	20명	20명	-	47조 1,905억원	35일	20만원	시
부산광역시	7~15명	10명	미정	15조 3,277억원	15일	22만원	시, 의회
대구광역시	7~20명	10명	10명	10조 7,308억원	20일(연장가능)	13만원	의회
인천광역시	10명	10명	10명	13조 9,157억원	20일(연장가능)	20만원	의회
광주광역시	7~20명	10명	10명	7조 1,102억원	20일(연장가능)	15만원	시
대전광역시	7~20명	10명	10명	6조 5,617억원	20일(연장가능)	15만원	시
울산광역시	10명	10명	10명	4조 6,059억원	20일	15만원	의회
경기도	10명	10명	10명	33조 7,670억원	30일(연장가능)	20만원	의회
강원도	9명	9명	9명	7조 5,232억원	20일(연장가능)	20만원	도
충청북도	7~10명	9명	9명	6조 6,576억원	20일(연장가능)	20만원	의회
충청남도	7~20명	14명	14명	7조 8,200억원	20일(연장가능)	15만원	의회
전라북도	7~20명	14명	14명	8조 8,723억원	20일(연장가능)	20만원	의회
전라남도	7~20명	10명	10명	10조 3,381억원	20일(연장가능)	15만원	의회
경상북도	7~20명	10명	10명	12조 821억원	20일(연장가능)	20만원	의회
경상남도	7~10명	10명	10명	12조 1,008억원	20일(연장가능)	20만원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7~20명	15명	15명	7조 639억원	25일(연장가능)	15만원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7~20명	7명	10명	20조 281억원	30일	16만원	의회

선임의뢰 없음	인원 수 없이 선임의뢰	인원 명시하여 선임의뢰
11	4	1

- 한편, 안 제2조 조 제목과 조문 내용 중 “정수”라는 용어의 지속 사용의 적정성과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률용어로서 “정수(定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서 “정하는 수” 또는 “수”로 정비·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기타 법령에서는 특정한 수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바,

※ 정수(定數): 일정하게 정하여진 수호나 수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10판) 60쪽\_법제처 >

번호	정비 대상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3672	정수	定數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 「알기 쉬운 법령 법률용어 2020」 \_국회사무처 법제실 >

번호	정비 대상 용어	원어	순화 용어	비고
1527	정수	定數	수	국

< 법률용어 정수(定數) 또는 수(數) 규정 예시 >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 검사위원의 선정 대상 인원수를 현행 특정한 수(정수 20명)가 아닌 범위(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 취지로 볼 때, “정수”라는 용어의 규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2조는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근거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조문 제목은 현행 “검사위원의 정수”에서 “검사위원의 수”로 수정하여 조문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게 하고,

\* < (현행)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조문 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근거 법령 규정 형태와 같이 검사위원 선정 범위를 규정하는데 적합하도록 “결산검사위원의 수”로 수정하여 적합한 법률용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b>20명으로</b>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b>정수</b> )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b>정수</b> 는 <b>15명 이상 20명 이내로</b>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b>수</b> )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b>수</b> 는 <b>15명 이상 20명 이내로</b>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된 결산검사 일정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 의결에 따른 공포 및 결산 검사위원 선임 의뢰 등 필요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결 및 공포 등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일정(안)

- 검사기간 : 2023. 4. 11.(화) ~ 5. 15.(월), 35일간(예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및 이송 : 제316회 임시회(2023.2.20 ~ 2.21.)
- 조례 개정안 공포 : 2022.3.9.(목)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제316회 임시회(2022.3.10.)
- 결산검사 : 2023. 4. 11.(화) ~ 5. 15.(월), 35일간(예정)

※ 검사일정은 향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협의로 변경 가능

- 본 부칙안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살펴보면, 결산은 예산 집행을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 없이 예산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 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인바, 개정 조례(안)의 적용관계 또는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조 제목과 조문 중 “정수”를 각각 “수”로 수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안 제2조 조 제목과 조문 중 “정수”를 각각 “수”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473
----------	------------

제안연월일 : 2022년 2월 17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조 제 목과 조문 중 “정수”를 각각 “수”로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조제목과 조문 중 “정수”를 각각 “수”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조제목 및 조문 중 “정수”를 “수”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20명</u> 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15명 이상 20명 이내</u> 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u>15명 이상 20명 이내</u> 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제목 중 “정수”를 “수”로 하고, 조문 중 “정수”를 “수”로 하며, “20명으로”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검사위원의 <u>정수</u>)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u>정수</u>는 <u>20명으로</u>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조(검사위원의 <u>수</u>)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u>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로</u>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p>